
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2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.

발의자 : 설훈 · 소병훈 · 위성곤
박홍근 · 유은혜 · 안민석
권칠승 · 조승래 · 신동근
이원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·운영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(feed-back)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,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·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”를 “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사항은”을 “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자격관리·운영기본계획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생 략)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u></p>	<p>제7조(자격관리·운영기본계획) 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② (현행과 같음) <p><u>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-----</u></p> <p><u>-----</u></p> <p><u>-----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</u></p>

<p>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<u>사항</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⑥----- -----<u>사항</u> <u>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-----</u> -----.</p>
---	---